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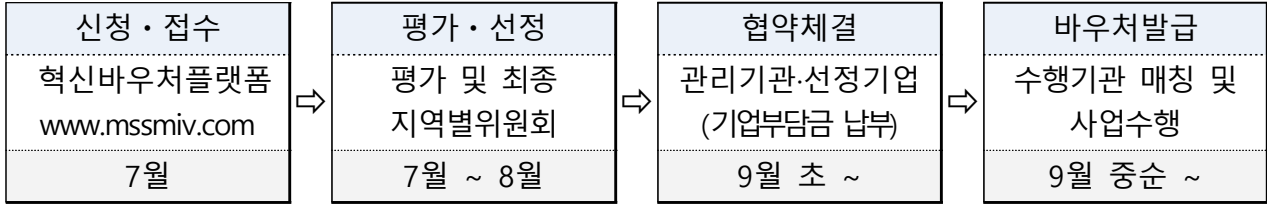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 예산규모 : 총 90억원
 -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6월말까지
- ☐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서비스 프로그램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 ② 그린분야 영위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별첨1 참고)
 - * 동 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별첨1의 그린분야 해당 사업의 영위 및 기술 사업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별첨3(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산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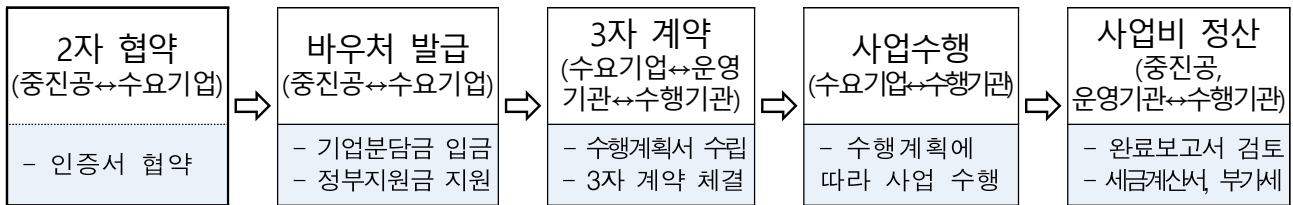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¹⁾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²⁾	[별첨3]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⑧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⑨		녹색기술 인증서(유효기간 內)	해당 시 제출
⑩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⑪		③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④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①, ②, ⑤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³⁾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별첨3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3) ①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②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③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④협업승인 기업, ⑤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⑨) 별첨1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신청 대상 요건(그린분야 영위 기업) 중 「녹색기술 인증 보유기업」에 해당 시 제출
- (⑩, ⑪)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ESG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자가진단 완료 후 「ESG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받아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 시 제출

○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

** ESG 경영 이행과의 연관성이 없는 선택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신청(3자계약 등)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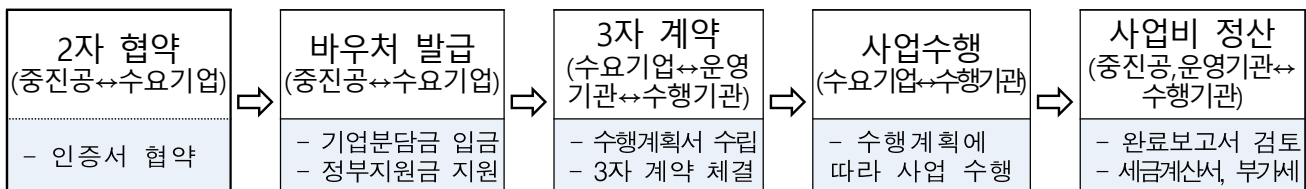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필수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경영보고서 발간 등	20
선택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관리 대응 등	15

			-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¹⁾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ESG 자가진단 확인증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에서 자가진단 이행 완료 후 발급 가능
⑧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⑨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⑩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⑪		③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④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①, ②, ⑤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①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②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③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④협업승인 기업, ⑤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⑦)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ESG 자가진단 이행* 완료 후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 받아 혁신바우처플랫폼에 파일 업로드

* ESG 자가진단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⑨)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⑩, ⑪)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 안내 예정

○ (지원규모) 약 5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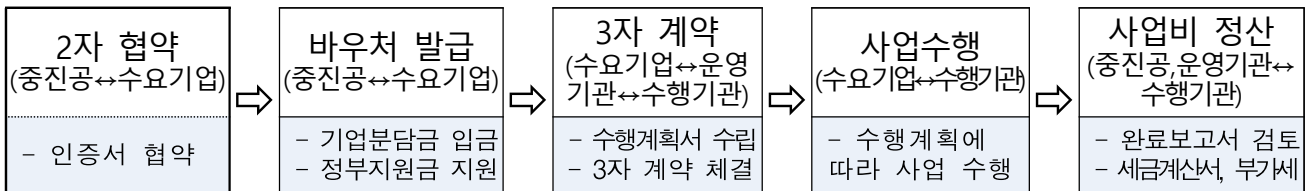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5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¹⁾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²⁾	[별첨]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⑧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⑨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별 개별공고문 참고

⑩	③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④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①, ②, ⑤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³⁾
---	---	--------------------------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2)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별첨3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 3) ①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②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③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④협업승인 기업, ⑤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⑨, ⑩) 지방청별 개별공고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요건 및 중점 지원업종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별첨6]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연중 상시 모집공고 진행 중으로, 참여신청 희망 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로 문의

별첨1

그린분야 영위 기준(녹색기술 혁신바우처)

※ 하단의 업종, 품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자격인 기업규모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및 주업종(제조업) 기준 미충족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1. 환경산업 (출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세부분야	관련 업종
자원순환관리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업
물관리	오·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 수도사업 관련 제조업
환경복원 및 복구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 제조업
기후대응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
대기관리	대기오염 통제 기기 제조업 실내공기질 통제 기기 제조업
환경 안전·보건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보건 대응 제조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업 생물자원 관리, 보전기기 제조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업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기기 제조업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관련 생산업·제조업
환경지식·정보·감시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2. 녹색기술(인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보유 기업

* 분야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물,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 녹색기술인증 현황 및 범위의 세부사항은 www.greencertif.or.kr 참조

3. 탄소중립 · 녹색경제 실현(출처 :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혁신성장공동기준)

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		
테마	분야	품목
첨단제조·자동화	차세대 동력장치	스털링엔진, 전기·하이브리드차 인프라/서비스, 고효율/친환경 선박,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 인프라/서비스
화학·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압전소재, 열전소재
	고부가표면처리	특수코팅
	바이오소재	바이오화학소재
	다기능소재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촉매, 자극반응성소재, 고기능 다공성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스마트패키징, 기능성 분리막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 재생열에너지(태양열/지열/수열),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친환경발전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에너지하베스팅,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무탄소 가스발전(수소, 암모니아),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에너지저장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저장클라우드, 리튬이온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바이오배터리,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레독스 흐름전지, 리튬메탈배터리, 카르노배터리축열발전
	에너지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액화기술, 폐열회수, 원격검침 인프라,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초고압직류송배전, 분산에너지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동적송전용량측정기술, 스마트직류배전, 가상발전소, 무선전력송신, 에탄분해법, 고온환원처리시스템, 섹터커플링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정밀농업, 농업용미생물, 수직농법, 생물비료, 스마트 드론 파밍, 곤충사육, 종자 개발·육종
	환경개선	정삼투, 바이오필름수처리, 친환경 냉매, 기름유출방제, 대기오염관리,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토양정화, 원전플랜트 해체,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자원효율관리서비스, 친환경 패키징, 유니소재화 제품, 모듈러 건축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방사성폐기물 처리, 폐자원에너지,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실내공기질 관리,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5G/6G 통신, 저전력블루투스,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RFID/USN, 와이기그 무선통신
	능동형 컴퓨팅	인공지능, 상황인지컴퓨팅, 에지컴퓨팅, 스마트물류시스템
	실감형콘텐츠	확장현실,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홈, 스마트글라스, 디지털트윈
	가용성강화	Xa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전자·센서측정	지능형데이터분석	빅데이터,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지능형 예측 및 분석, 스마트시티
	차세대 반도체	전력반도체소재, AI칩
	웨어러블 디바이스	고속충전
	객체탐지	나노센서
지식서비스	고부가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제품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5차 개정) 7개 테마, 21개 분야, 122개 품목과 연계

별첨2

지방청별 지역자율형 바우처 지원 주제

연번	지방청	사업명
1	서울	· 4대 미래성장산업 제조 경쟁력 강화 - ICT, 바이오의료, 디지털 문화콘텐츠, 패션섬유
2	경기	· 경기 반도체·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지원 -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3	인천	· 인천 반도체·뿌리산업 제조역량 강화 지원
4	강원	· 강원지역 맞춤형 혁신바우처 - 강원주력산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혁신공모사업 참여기업
5	대전	·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세종	·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부품 제조기업
6	충남	· 충남 주력산업 바우처 - 충남 지역주력산업 분야 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참여기업 등
7	충북	· 충북 주력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 융합바이오, 첨단반도체,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분야 기업
8	전북	· 지역육성산업 혁신바우처 - 주축산업, 규제자유특구 기업, 지역산업 성장프로젝트 참여기업
9	광주 전남 제주	· 지역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바우처 지원 - 주축산업, 규제자유특구 기업, 지역산업 성장프로젝트 참여기업
10	대구	· 미래차 전환 및 로봇산업 육성
	경북	· 미래차 전환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육성
11	부산	· 부산지역 맞춤형 바우처 지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2	울산	· 제조 창업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창업 7년 이하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중점지원
13	경남	· 경남지역 주력산업(원전, 항공, 방산) 지원

별첨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 1】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대표자	학 력	졸업연월	학 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 출 처	국내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해외						개월	일
							개월	일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중점지원업종과의 연관성

기업의 주력 생산품 및 업종이 사업 공고문의 중점지원업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 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산업분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설명
※ 중점지원업종은 서면평가 가점 사항으로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5-2.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은 각 분야별 50%~90%, 기업분담금은 각 분야별 10%~50%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90%), 3억원~10억원(80%), 10억원~50억원(70%), 50억원~120억원(5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8. 추진일정

신청분야	'23년										'24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 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 협업체 기본정보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 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마케팅			
	예)디자인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 B to B		☐ B to C
	판로대상	국내		
		국외		

별첨4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하다.

별첨5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0년 ~ '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0년.1.1 이전 설립 기업	- '20년, '21년, '22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0년 설립	- '21, '22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1년 설립	- '22년 매출액
'22.1월~'22.11월 설립	- '22년 매출액을 '22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2.12월 설립	- '22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3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3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18.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1.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1.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6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61
경기지방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972
인천지방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450-1155
부산지방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601-5150
대구경북지방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참단로 122-11	053-659-2292
대전세종지방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46
울산지방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052-210-0050
광주전남지방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062-360-9143
강원지방청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32
충북지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46
충남지방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041-415-0631
전북지방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52
경남지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5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05호	02-2106-7455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12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4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2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3층	032-560-2377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74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60-9007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24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단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13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51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2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49-9373
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46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트시티 201-206호	044-860-8307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11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903-9356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00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5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12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1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35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77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4층	053-606-8432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본부동 112호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4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동 1층	051-630-7402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276-8937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15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중진공 지역본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서울	서울	금천구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	서초구 ,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북부	중구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	인천	연수구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	화성시 ,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	고양시 ,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	대전시	
	세종	세종시	
충남	충남	천안시 ,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	충북	청주시 ,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영동	강릉시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군산시 ,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
광주· 전남	광주	광주시	
	전남	무안군 ,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전남동부	순천시 ,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제주	제주시 , 서귀포시	
대구· 경북	대구	대구시	고령군
	경북	구미시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고령군
	경북동부	포항시 ,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사상구 ,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경남	경남	창원시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 : 중진공 지역본부 소재 구역